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청 소 년 복 지 지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교부하여 시설 내 화장실 등에 비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 누구나 보다 손쉽게 보건 위생물품(생리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된 정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시설 등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비치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신설(제3조의2 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한다”로 한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 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신 설>	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 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교부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u>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u>	② ----- ----- ----- ----- ----- ----- -----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6232